

1. 목적

특용작물(버섯, 생약, 차, 잠업, 인삼)의 생산·유통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특용작물의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.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품목별로 재배를 규모화할 수 있도록 생산·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
- 세부사업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 추진
- 지원의 규모화 및 집단화로 지원의 효율성 제고
-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강화로 지원효과 증대

3. 근거 법령

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조, 인삼산업법 제3조

4. 연도별 지원계획

<총괄>

(단위:개소, 백만원)

		'92~'96년	'97년	'98년	'99년(예산안)
사업량		460	386	463	113
사업비	계	335,223	249,025	290,596	71,800
	보조	19,281	16,565	7,059	—
	용자	111,120	56,170	75,357	57,440
	지방비	18,373	15,725	7,059	—
	자부담	186,449	160,565	201,121	14,360

<특작>

(단위:개소, 백만원)

		'92~'96년	'97년	'98년	'99년(예산안)
사업량		218	139	128	28
사업비	계	150,031	66,437	63,996	14,000
	보조	14,501	13,287	6,399	—
	용자	89,980	26,575	38,397	11,200
	지방비	14,501	13,287	6,399	—
	자부담	31,049	13,288	12,801	2,800

5. '99년도 사업시행요령

<사업개요>

가. 사업내용

- 지원방향
  - 품목별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생산·유통시설을 종합적(Package 방식)으로 지원
  - 1개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표준사업의 세부사업(Menu)중에서 농가희망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
  - 1개단지의 재배면적 규모는 표준사업의 기준면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·군수가 지역실정에 따라 증·감 조정할 수 있음
  - 인삼은 식재사업과 시설기자재 현대화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하던 것을 표준단위사업으로 묶어 예시된 사업중에서 농가희망에 따라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용자금을 지원
- 지원대상사업
  - 특작

**농림부 약용작물 생산/유통지원 사업내용 전문**

- 버섯:종균생산시설, 첨단재배시설, 균상재배시설, 냉동운반차량, 저온저장고
- 생약:공동육묘포 설치, 재배시설, 조제시설, 집하장
- 차:다원조성, 생산기반조성, 제다시설
- 잠업:뽕밭조성, 생약재배기자재, 양잠산물 가공기자재
- 인삼:인삼생산에 소요되는 식재 자금 용자지원 및 우량묘삼 생산, 전용 농기계 등의 시설기자재 현대화사업 용자지원

- 지원비율:용자 80%, 자부담 20%(사업단가 기준)
- 용자조건:연리 6.5%, 3년거치후 7년상환(인삼은 2~6년 거치후 일시상환)
- 사업기간:'99. 1. 1~'99. 12. 31

\* 품목별 메뉴사업을 조정하여 품목별로 개소당 500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원(예시1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여러품목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각품목별 세부메뉴사업중 필요사업들을 합하여 개소당 500백만원으로 조정하여 지원(예시2)가능

생약지원규모(표준사업)

(단위:백만원)

세부사업명	단위	사업량	단가	사업비	시설내용
◇ 생약 (기준면적:20ha)					
육묘포설치	ha	1	30	30	종료대, 비료대, 농약대, 토지임차료, 고용노력비등
재배시설	ha	20	5	5	종료대, 비료대, 농약대, 시설비등
조제시설	100평/동	1	200	200	건축물(전기, 수도등 부대시설 포함) 기기(선별기, 탈피기, 세척기, 탈수수송 콘베어, 절단기, 건조기, 상송콘베어, 계측기, 자동포장기, 지게차)
집하장	150평/동	1	120	120	철근콘크리트 구조, H빔 판별

- (예시1) 버섯균상 재배시설+버섯 저온저장고=500백만원
- (예시2) [버섯균상 재배시설+생약 조제시설+생약재배시설=500만원] 또는 [제다시설+생약조제시설+생약 재배시설=500만원]
- 우량농기자재 사용
- 지원대상 농업기계중 농업기계 품질보증 대상기종인 경우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 농업기계 구입

나. '99 사업비(예산안) 내용 <품목별 지원내역>

(단위:백만원)

내용별	사업량	사업비					
		사업비합계	예산액(농특회계)			지방비	자부담
			계	보조	용자		
계	113	71,800	57,440	—	57,440	—	14,360
특작 (버섯,생약,차,잠업)	28	14,000	11,200	—	11,200	—	2,800
인삼	85	57,800	46,240	—	46,240	—	11,560

- \* 용자조건:연리 6.5%, 3년거치후 7년상환(인삼은 2~6년 거치후

일시상환)

<특작:버섯, 생약, 차, 잠업>

(단위:백만원)

시·도별	사업량	사업비					
		사업비합계	예산액(농특회계)			지방비	자부담
			계	보조	용자		
계	28	14,000	11,200	—	11,200	—	2,800
경기	2	1,000	800	—	800	—	200
강원	2	1,000	800	—	800	—	200
충북	2	1,000	800	—	800	—	200
충남	2	1,000	800	—	800	—	200
전북	8	4,000	3,200	—	3,200	—	800
전남	4	2,000	1,600	—	1,600	—	400
경북	7	3,500	2,800	—	2,800	—	700
경남	1	500	400	—	400	—	100

- \* 개소당 사업단가:500백만원(잠업은 107만원)

<추진체계>

가. 사업주관기관:시장,군수

나. 사업담당부서

- 농림부:채소특작과 (02)504-9422, 9423, 9424

- 시·도:농산물유통과(경기, 강원, 경남), 유통특작과(충북, 경북), 농산과(충남, 전북, 전남)

300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소장에게 별도의 세밀한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, 농촌지도소장의 정밀검토결과 적격사업자로 판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처도록 하여야 한다.

- 전문경영체외의 생산단체 등에게는 농업인등보다 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음.

- \* 인삼사업자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민간수출업체와 계약재배한 농가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타지역 거주자 차별대우 금지
- 논에 본사업과 관련하여 비외 타작물재배 및 시설 설치시 차등지원
- 대구·경북 재경지정 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
-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, 지역여건상 불가피하

게 지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·도 지사가 판단하여 허용

- 농업진흥지역밖의 논은 사업대상순위를 받아 산지보다 후순위 부여

○ 대상자 확정

-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배정되는 결과에 따라 예산요구시 결정된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로 확정
- 우선순위자가 사업포기시 포기서 징구

라. 사업시행

○ 사업시행계획 수립

- 시장·군수는 예산과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즉시 품목별 표준사업의 세부사업별(Menu)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에게 보고
- 시·도지사는 [별지 제1호서식]에 의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

○ 사업시행계획의 변경

- 시장·군수는 사업시행계획 수립후 품목별 세부사업간에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변경승인 요청
- 시·도지사는 개소당 사업단가 범위내에서 사업목적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지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

○ 자금지원

- 용자취급기관:(특작)농업협동조합, (인삼)인삼협동조합
-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이 배정된 때에는 사업자별로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고 시·군의 사업주관과에 통보
- 사업자는 사업진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용자금 취급기관에 용자신청

- 용자취급기관은 시·군의 사업주관과에서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한

후 용자신청

- 사업주관과는 특별한 사유없이 용자금 집행을 지연하여 사업의 부실화나 시행에 지장을 주어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.

- 부여
- 시장·군수는 총사업비 규모가